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유산수리 참여자 확대 등 〉

■ 김윤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86호)

2024.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국가유산수리기술회 위원 위촉 대상 분야 확대(안 제4조의2)	3
2. 전문공사 공동수행 대상의 명확화(안 제5조의2)	5
3.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확대(안 제11조)	8
4. 부실 국가유산 수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규정 정비(안 제49조)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윤덕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2024. 7. 8.

다. 회 부 일: 2024.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요건,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요건과 관련하여 업무 분야가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에 제약이 있고, 무형유산의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나 보유자의 고령화로 인하여 국가유산수리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수리 업계의 특성상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기술능력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외사유

를 확대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계속해서 받는 부실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업무 분야를 확대하고, 국가유산수리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미 이루어진 전승교육사에 대해서도 국가유산수리기능자격을 인정하여 국가유산수리 인력을 확충하며, 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등에도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부실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항제3호, 제5조의2, 제11조제1항 및 제49조).

Ⅲ. 검토의견

1.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분야 확대(안 제4조의2)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 위촉 요건 중 특정 업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는 요건과 관련하여, 현재 건축, 자연과학 등 8개 업무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2. (생략) 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u>공예</u> 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 ⑧ (생략)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u>공예</u> 등의----- ----- ----- ----- ④ ~ ⑧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수리등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②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건축, 자연과학 등 8개 업무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한 업무 분야 외에도 고고, 민속, 전통조경 등에 대한 업무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불교고고학, 민속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2. 전문공사 공동수행 대상의 명확화(안 제5조의2)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국가유산 수리의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전문공사업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u>제5조제1항에도</u> 불구하고 국가유산 수리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단독으로 수리할 수 있다.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u>제5조제1항 본문에도</u> ----- ----- ----- ----- ----- ----- -----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게 하거나 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되(제5조제1항 본문),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아니더라도 수리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어(제5조제1항 단서)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음¹⁾.

또한, 현행법 제5조의2는 국가유산의 안전 또는 기반 설비 마련 등을 위해 시행하는 전기·통신·소방공사 등의 전문공사가 포함되는 국가유산수리는 동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고 있음²⁾.

현행법 제5조의2의 취지는 전문공사가 필요한 국가유산수리에 한하여 제5조제1항 본문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이나 현행 조문은 예외의 대상을 “제5조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서에 해당하는 경미한 국가유산 수리의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전기·정보통신·소방

-
-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국가유산의 소유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고 국가유산수리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단독으로 수리할 수 있다.

등의 전문공사업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법 제5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대상 조항을 “제5조제1항 본문”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취지가 잘못 해석될 여지를 축소하여 법 해석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판단됨.

3.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확대(안 제11조)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의 대상을 무형유산 보유자 이외에 무형유산 전승교육사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①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① ----- ----- ----- ----- ----- ---제17조, 제19조 및 제3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국가유산수리 기능자의 자격을 부여하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하루 동안

주어진 과제를 완성해 제출하여 작업과정과 완성도를 전문가가 채점하는 실기시험(70%)과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30%)으로 구분되며, 두 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공고하고 있으며³⁾, 그 외에 자격요건이나 결격사유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

또한, 자격시험 이외에도 우수한 전통기술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활용하기 위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 보유자⁴⁾ 중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11개 기능 분야⁵⁾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따른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마친 때부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⁶⁾.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③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실기시험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한다.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합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실기시험 합격기준: 실기시험 심사위원 1명당 7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30점 이상
2. 면접시험 합격기준: 면접시험 심사위원 1명당 3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10점 이상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시·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및 국가유산청장의 고시를 통해 규정하고 있음.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마쳐야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의 대상을 무형유산 보유자 이외에 무형유산 전승교육사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무형유산 전승교육사는 무형유산의 전승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으로 무형유산 전승교육 이수자 중에서 일정기간 전승활동을 하고 충분한 기량과 실적을 갖춘 사람을 무형유산 보유자의 추천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인정하고 있음⁷⁾.

무형유산 전승교육사는 최소 1년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거나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그 기량을 심사받아 해당 국가

-
- 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전승교육사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가.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 나. 시·도무형유산 보유자로서의 경력이나 전승교육사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해당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4.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했을 것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2. 시·도무형유산 이수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해당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한 결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 전승교육 이수자 중에서도 전승활동 경력 및 전승기량과 전승실적, 전승기여도 등을 모두 갖췄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일회적인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보다 더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무형유산 전승교육사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부여에 대한 특례를 두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봄.

또한, 현재 무형유산 보유자가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 자격을 인정받은 보유자의 국가유산수리 참여가 실제로는 어려운 실정으로, 개정안은 전통기술에 대한 역량이 검증된 전승교육사에 대하여도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을 인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무형유산 전승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국가유산 수리분야 무형유산 종목 등 현황]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종류 (11개 종류)	무형유산종목 (11개 종목)	보유자 수 (국가지정/시도지정)	전승교육사 수 (국가지정/시도지정)
한식목공(대목수)	대목장	7 (1/6)	4 (1/3)
한식목공(소목수)	소목장	17 (3/14)	7 (2/5)
화공, 모사공	단청장	7 (1/6)	5 (3/2)
	불화장	7 (1/6)	2 (2/-)
번와와공	번와장	1 (1/-)	0 (-/-)
제작와공	제와장	1 (1/-)	0 (-/-)
철물공	두석장	7 (2/5)	3 (-/3)
조각공(목조각공)	목조각장	11 (2/9)	5 (2/3)
조각공(석조각공)	석장	7 (2/5)	0 (-/-)
칠공	칠장	14 (1/13)	5 (1/4)
표구공	배첩장	1 (-/1)	1 (-/1)
계		80 (15/65)	32 (11/21)

※ 자료: 국가유산청

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 설> 5. ~ 18. (생략) <신 설> ② ~ ④ (생략)	으로----- ----- -----. 4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 18. (현행과 같음) 1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49조제1항 각 호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이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제1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제3호),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5호)에는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항 제4호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요건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⁸⁾,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등록요건이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①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수차례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나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또는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필요적으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③자본금 이외의 기술능력, 시설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이 미달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

이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복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폐업 및 사업자등록 말소로 인해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부실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한 관리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실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휴직 등으로 국가유산수리 인력이 이탈하여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에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나, 전문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성이 강하고 시장이 작은 국가유산수리 업계의 특성상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기술능력의 등록요건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면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소속된 수리기술자·기능자가 휴직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기술능력 등의 다른 등록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예외사유로 인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 종사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지속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3차례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그 등록을 당연 취소할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게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으므로, 안 제49조제1항제4호의2의 등록 취소 요건에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유사 입법례와 같이⁹⁾ ‘최근 5년’ 등의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문 의 처
02)6788-5384

9) [참고3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유사 입법례] 참조

참고 1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현황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현황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1년	24	국가유산청	전체회의 1회, 분과회의 10회 개최 (심의건수 : 25건)
'22년	75	국가유산청	분과회의 21회 개최(심의건수 : 41건)
'23년	82	국가유산청	분과회의 23회 개최(심의건수 : 51건)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위촉권자	국가유산청장
근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임기	3년('24.7.15.~'27.7.14.)
심의사항	① 국가유산수리 기본계획(법정계획) ② 국가유산수리 기준 ③ 국가유산수리 계획 ④ 설계승인 심사 ⑤ 기타 사항 등
조직도	<pre> graph TD W[위원장] --- S[간사] W --- B[부위원장] W --- BK[분과위원회] BK --- BS[보수분과
건조물 수리] BK --- BP[복원정비분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유산 수리] BK --- BH[근현대분과
근대 건축물·시설물 수리
보존처리 및 현대적 기술] </pre>
인원	위원 29명(비상근)
위촉방향	국가유산수리 분야 전문성 보유, 다양한 전통분야 위원 위촉
구성	3개 분과위원회(보수분과, 복원정비분과, 근현대분과)
직종	교육인 16명, 공무원·공공기관 종사 5명, 전문직종사 4명, 기타 4명
분야	전통건축, 근대건축, 토목, 보존과학, 미술, 고고학, 조경, 단청 등

참고 2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

종류		업무범위
1. 한식목공	대목수	목조 건조물의 해체·조립 및 치목(治木)과 그에 따른 업무
	소목수	목조 건조물의 창호·단집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제작·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2. 한식석공	가공석공	석재의 가공과 그에 따른 업무
	쌓기석공	석조물의 축조·해체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3. 화공		단청(불화를 포함한다)과 그에 따른 업무
4. 드잡이공		드잡이(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 등을 이용하여 바로잡는 일을 말한다)와 그에 따른 업무
5. 번와(翻瓦)와공(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사람)		기와의 해체 및 이기와 그에 따른 업무
6. 제작와공		기와전돌(博突,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 등의 제작과 그에 따른 업무
7. 한식미장공		미장과 그에 따른 업무
8. 철물공		철물 등의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9. 조각공	목조각공	목재를 이용한 조각, 목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석조각공	석재를 이용한 조각, 석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0. 칠공		옷 등의 전통 재료를 이용한 칠, 칠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1. 도금공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2. 표구공		표구, 표구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3. 조경공		조경의 시공과 그에 따른 업무
14. 세척공		세척과 그에 따른 업무
15. 보존과학공	훈증공	재료나 자재의 살균·살충 방부 등을 위한 훈증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처리공	보존처리와 그에 따른 업무
16. 식물보호공		식물의 보존 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과 그에 따른 업무
17. 실측설계사보		실측 및 설계도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8. 박제 및 표본제작공		박제·표본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9. 모사공		서화류의 모사와 그에 따른 업무
20. 온돌공		온돌의 해체·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참고 3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요건 관련 유사 입법례

법률명	조문내용(조항)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제7호·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5. 공사업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와 피상속인인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해당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3.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5.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